시 보

선	기관의 장
람	

all ways INCHEON

제1877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442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조례 제644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 16

○ 인천광역시조례 제6444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 21

○ 인천광역시조례 제644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29

○ 인천광역시조례 제644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3165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4

○ 인천광역시규칙 제3166호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1

○ 인천광역시규칙 제3167호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3

○ 인천광역시규칙 제3168호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61

훈 령

○ 인천광역시훈령 제1214호 인천광역시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 63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6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7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71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및 매립목적 변경 승인 고시 ····· 72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19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74

회 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19호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18호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88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19호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01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25호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1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0-26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8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442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442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조리 행위신고”를 “부조리행위 신고”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조리 행위”란을 “부조리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조리 신고자”를 “부조리행위 신고자”로,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①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자는 부조리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교육청 감사부서로 해야 하며, 방문·우편·팩스·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부조리 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중 “부조리 조사”를 “부조리행위 조사”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를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조리 신고”를 “부조리행위 신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신청서”를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로, 같은 서식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조리 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 대장”을 “공직자 부조리신고 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제20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급기준	
1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2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퍼센트 이내(단,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퍼센트 이내 추가지급)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지급)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2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300만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3천만원이내
		· 다수의 공직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천만원이내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0만원이내

※ 비고 : 1.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

공 직 자 부 조 리 행 위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신고대상자)	이름		직		
	소속				
	연락처		직업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6하원칙에 의거 기재)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 증거서류목록을 적고 증거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우편물 수령지)			
	연락처			

공직자 부조리신고 조사결과 사 항	접수번호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신고한 부조리행위가 있었던 날	20 년 월 일
신고자가 부조리행위를 알게된 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 급 결 정 통 지 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번호		
보상금 신청인	성 명	
	주 소	
지급 결정 사항	결정 일자	20 년 월 일
	결정 내용	
	지 급 액	금 원정(₩)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대장

연번	접수일자	신고자	부조리행위 공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증거자료 등)	사실조사 결과	보상금 신청 여부	보상금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일	비고
			소속	직급	성명				가부	지급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부조리행위 신고----------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3. “부조리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직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부조리행위”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부조리행위 3. “부조리행위 신고자”------ ---------- 부조리행위---------- --------. 4. “부조리신고 보상금” ------ ----------

현 행	개 정 안
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 부조리행위--- ---------- ---------- ---------- ----------.
제5조(신고의 방법 등) ① 부조리 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는 교육청 감사관에게 해야 하며, 감사부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방법 등) ①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자는 부조리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교육청 감사부서로 해야 하며, 방문·우편·팩스·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은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삭 제>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조리 행위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부조리행위 ---------- ---------- ---------- ---------- 제출해야 ----.
제13조(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부조리 행위 신고 처리, 운영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부	제13조(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부조리행위 ---------- ---------- ---------- 부

현 행	개 정 안
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리신고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	3. ----- 부조리행위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상금 지급 대상) ① (생략)	제19조(보상금 지급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급 대상은 신고자가 부조리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부조리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을 초과한 신고는 제외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가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보상금의 지급 시기)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부조리 조사 및 처분이 종료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22조(보상금의 지급 시기) ---------- 부조리행위 조사 ---------- 지급해야 ---------- ----------.
제24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보상금 지급 제외)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2항의 지급대상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2.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2019. 7. 15.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 공직자 부조리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정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제19조제2항)**
  - 부조리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내용 삭제
  - 부조리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을 초과한 신고 제외 내용 삭제
- **공직자 부조리신고 제도 실효성 및 활성화 제고**
  -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 시 보상금 지급 제외 조항 신설(제24조)
-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정비(별표1)**
  - 중복 지급대상 정비 및 보상금액 조정
  - 알선·청탁행위 신고: 200만원 → 300만원
- **일부 띄어쓰기 등 정비**
  - 부조리 신고 → 부조리신고, 부조리 행위 → 부조리행위 등

인천광역시조례 제6443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44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준법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준법교육”이란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준법의식”이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준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
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방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학생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상담 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생의 상담·치유 등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 교육을 통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 여건 조성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제3조)**
· 준법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제4조)**
· 준법교육 및 학생 비행예방 등을 위한 **예방교육, 상담지원, 연수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제8조)**

인천광역시조례 제6444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444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구성원”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를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말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정관념과 차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교육과

정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 및 보호자는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과 함께 노력한다.

④ 학생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 및 규범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 연수 시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청의 교육 및 홍보에 협조하고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이 연 1회 이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성인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추진 방안
2.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3.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평등 교육 내용 및 실행 방안
4.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지원 방안

5.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성차별·성폭력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방안

8.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9. 그 밖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성인식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 및 지역사회 협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성인식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

3. 성차별·성폭력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4.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성인식 개선 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성인권분야 활동경력 5년 이상 전문가

나. 청소년, 아동복지 활동경력 5년 이상 전문가

다. 의료, 경찰, 법률 전문가

라.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

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 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시민(학생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학생참여단) 교육감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해 학생참여단을 구성·운영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가해자와의 수업 및 업무 공간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 사안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사후교육)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 및 성인지 감수성 증진 교육 등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전담부서) ① 교육감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과 성인지적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및 상담 활동, 가해자 교육 및 선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 및 교육 관련 조치를 교육청 담당부서 및 전문인력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과 여성·인권·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확보) 교육감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 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 등의 책무(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제5조)**

· 주요사항 자문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을 위한 **성인식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6조 및 제7조)**

- 위원장(부교육감), 25명 이내

·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참여단 구성·운영(제12조)**

· 성차별·성폭력 근절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여성·인권·청소년 관련 단체 등

인천광역시조례 제6445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44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를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

③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교육감은 관할 사립학교(유치원을포함한다)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기여

2. 주요내용

·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제6조)**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 (제7조)**

·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교육 (제9조)**

· 녹색제품 구매 증진을 위한 **사립학교 우선구매 권장 (제10조)**

· **소속 기관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반영 (제12조)**

인천광역시조례 제6446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44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을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를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을 “학교장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학생예방교육)”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지체 없이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지도교사”를 “책임교사”로, “개입하여 처리”를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조정”을 “갈등 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6. 심리교육 및 치료(위탁을 포함한다)

7. 그 밖의 관계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지도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담임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를 말한다)로”를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제2항 중 “상호 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를 “서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에 서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과 및 병과된 조치의 이행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전학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 등 교육기관 확대·지원

제18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발생한때”를 “발생한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 ---------- ---------- ---------- ---------- ---------- ---------- ----------.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 ----------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 ----------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여야 - ----------. ② 학교장은 ---------- ---------- ---------- ---------- ---------- ---------- ----------.
제10조(학생예방교육) ① ~ ③ (생 략)	제10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학생자치활동 강화) 교육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2. 학생토론문화 조성 3. 동아리활동 활성화 4. 일과 전·후 및 휴업일을 이용한 체육 활동	
제12조·제13조 (생 략)	제11조·제12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4조(교원의 권한 및 책무강화) ① 담임교사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해당 학생에게 관계법령(지침을 포함한다)과 학칙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생 략)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신 설>	제13조(교원의 권한 및 책무강화) ①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지체 없이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책임교사------ ---------- 처리------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현 행	개 정 안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학생 간 반성과 화해 유도	<삭 제>
5.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조정	4. ---------- 갈등조정
<신 설>	6. 심리교육 및 치료(위탁을 포함한다)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기타 학칙으로 정한 교육적 조치	7. 그 밖의 관계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지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전담기구 활동)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담임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를 말한다)로 구성한다.	제14조(전담기구 활동) ① ----------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제16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생 략)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상호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서로 -- ---------- ----------. 단,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에 서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과 및 병과된 조치의 이행여부 등과 관계없이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전학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대안위탁학교 확대 및 지원 5.·6. (생 략)	제17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 등 교육기관 확대·지원 5.·6. (현행과 같음)
제19조(사후교육) ① 학교장은 학	제18조(사후교육) ① ---------

현 행	개 정 안
교폭력이 발생한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발생한 때----------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제21조 (생 략)	제19조·제20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제22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즉시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보고 (제13조)**

- 개정전: 경미한 경우 담임교사가 교육적 방법으로 조치 가능

· **학교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제14조)**

· **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에 서로 동의한 경우 피·가해학생 대면 가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조치 신속 이행 (제16조)**

규 칙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2019. 8. 5. 시행)되어 간행물 심의 관련 업무의 담당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부서 명칭과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대변인”을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제13조제1항, 제1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20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165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대변인”을 각각 “소통기획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대변인”을 각각 “소통기획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광고유치 공고문

인천광역시 제 호

광 고 공 모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광고접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광고접수처 :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전화:)

다. 광고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광고원고를 첨부하여 제출

라. 간행물의 명칭 :

・간행부수 : ・주요내용: (50자 이내 간략하게) ・주요배부처 :

마. 규 격 :

바. 광고게재지면 :

사. 광고료기준

표지4(뒷표지)	표지2·3, 표지2·3대면	내지

아. 광고게재 유의사항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허위・과대광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고게재를 제한함

자. 구비서류

1) 광고게재신청서 1부(소정양식)

2) 광고 시안 1부

3) 시세, 국세 완납증명 각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해설

- 표지 1 : 겉표지
- 표지 4 : 뒷표지
- 표지 2 : 겉표지의 뒷면
- 표지 3 : 뒷표지의 앞면
- 표지 2 대면 : 표지 2의 옆면
- 표지 3대면 : 표지 3의 옆면
- 내지 : 표지1・2・3・4・ 및 표지2 대면・표지3 대면을 제외한 면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광고게재신청서

신 청 인	성 명(법인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광고게재 간행물명		
	광고 규격	지 면 : 가로×세로(㎝)	
	광 고 기 간		
	광 고 내 용		별 첨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의거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광고 시안 1부 2. 시세·국세 완납증명 각 1부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1.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 허위·과대광고 등이 포함된 내용

2. 처리절차

광고유치공모 → 광고 신청(광고신청자)
(소통기획담당관실)

→ 광고접수 및 내용심의 → (소통기획담당관실) **계약** (소통기획담당관실) **→ 광고료 납부** (신청자)

→ 광고게재
(발간부서)

[별지 제7호서식]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인천광역시장 발신 :
참 조 소통기획담당관
제 목 간행물판매실적 보고
( )월의 시정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간행물명	도서현황		판매단가	판매현황				재고량
	금월입고량	누계		금월판매량		누계		
				부수	판매액	부수	판매액	
계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간행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인천광역시 간행물심의위원회 위원장 발 신 :
참 조 : 소통기획담당관
제 목 : 간행물 재고처리 결과보고

간행물명	판매현황				처리내역				
	기간	출고량	판매량	재고량	계	폐기처분	무상보급	참고자료로 활용	기타
계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6408호, 2020.6.25. 시행)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기금운용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소통협력관으로 변경(제9조)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20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166호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장”을 “소통협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의사상자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희생에 걸맞은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당 지급액 범위를 규정 함(제2조)

- 의사자 유족 : 5만원
- 의상자 본인 : 부상등급 별 차등 지급

(1~2급: 3만원, 3~6급: 2만원, 7~9급: 미지급)

나. 수당 지급 대상과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대표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제3조)

다.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사유 및 절차를 마련함(제5조)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20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167호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특별위로금 지급”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를 “별표1 및 별표2”로, “특별위로금”을 “각각 특별위로금과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고 수당은 매월 넷째주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를 “특별위로금·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위로금”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위로금”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위로금”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위로금”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으로, “특별위로금”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하면 선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를 “특별위로금·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위로금”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으로, “별지 서식의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위로금”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위로금”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특별위로금”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으로, “특별위로금”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위로금”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으로, “특별위로금”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특별위로금·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수당을 받는 사람이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이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이용란을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위로금 지급액 구분표(제2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의 사 자		30,000,000원
의 상 자	1 급	15,000,000원
	2 급	12,500,000원
	3 급	10,000,000원
	4 급	7,500,000원
	5 급	5,000,000원
	6 급	3,500,000원
	7 급	2,000,000원
	8 급	1,500,000원
	9 급	1,000,000원

비고 : 의상자의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른다.

[별표 2]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2조 관련)

구분		月 지급액
의사자 유족		50,000원
의상자	1~2급	30,000원
	3~6급	20,000원
	7~9급	-

비고 : 의상자의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6">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td><td>처리기간
30 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td><td></td><td>성별</td><td></td></tr>
<tr><td>전화번호</td><td></td><td>의사상자와의 관계</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의사상자
관련내용</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결정일자</td><td></td><td>증서번호</td><td colspan="3"></td></tr>
<tr><td>특별위로금
구 분
☑</td><td colspan="5">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등급 ( )급</td></tr>
<tr><td colspan="2" rowspan="2">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td><td>행정기관
(명칭)</td><td>금 액</td><td colspan="2">지급일자
(신청일자)</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td></tr>
<tr><td>신청인
제출
서류</td><td colspan="5">1. 특별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td><td rowspan="2">수수료

없음</td></tr>
<tr><td>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td><td colspan="5">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td></tr>
<tr><td>개인
정보
수집·
이용</td><td colspan="6">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td></tr>
<tr><td colspan="7">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의사상자와의 관계			
	주 소					
의사상자 관련내용	성 명		생년월일			
	결정일자		증서번호			
	수당 구분 ☑	의사자 수당 □ 의상자 수당 □ 의상자 등급 ( )급				

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	행정기관 (명칭)	금 액	지급일자 (신청일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최초 신청시>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 매월 지급 전 가족관계, 전출 등 변동사항 유무를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20. 7. 14.)하면서 부칙 조항에 다른 유사 조례인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20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168호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 령

인 천 광 역 시 훈 령 (발 령)

☐ 제 명 : 인천광역시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398호, 2019.1.30. 개정)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 업무에 연계성을 유지하고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야별 지원반을 8개에서 7개로 통합 구성(제2조)

나. 종합상황실장의 각 분야별 지원반 지휘통제 근거 명시(제3조)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임무 및 운영요건 규정(제4조 및 제5조)

라. 관련 법, 지침 개정에 따른 용어·명칭 수정(제1조부터 제6조까지)

인천광역시 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20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214호

인천광역시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7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② 군·경합동상황실은 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내에 설치한다.

③ 군·경합동상황실장은 17사단 동원참모(교훈참모) 및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팀장급으로 하며 반원은 군·경 정보, 작전요원으로 구성한다.

④ 종합상황실은 시에 설치하고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반원은 기획조정실 소속직원 및 각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한다.

⑤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한다.

⑥ 군·경합동상황실, 종합상황실 및 각 지원반은 임무에 준한 기능별 지원조로 편성한다.

제3조(통제) 각 분야별 지원반은 종합상황실장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보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지원본부장
   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라. 예하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휘·감독
   마.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통제
   바.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를 유지
   사. 군·경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아.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2. 종합상황실장
   가. 각종 상황을 파악 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나.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마. 예하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바.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사.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합동상황실에 통보
자. 충무 3종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3. 군·경합동상황실장
가. 정보지원계획 수립·시행
나.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다. 군·경 작전상황 종합분석, 판단 및 조치
라. 종합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 제공,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마. 주민신고 업무 관장

4. 총괄지원반장
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5. 인력·재정동원지원반장
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다. 실비 변상 및 치료, 구호 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을 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을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를 관장
사.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자.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6.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장
가.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 업무 관장
바. 차량통제

7. 의료·구호지원반장
가.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의료·구호조를 편성·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바.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업무 수행

8. 통신·전산지원반장
가. 통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관·군·경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
마.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바. 국가동원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9. 보급·급식지원반장
가. 보급 및 급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업무 관장
나.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및 지원
다.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10. 홍보지원반장
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를 조정·통제하고 홍보(계몽)반을 편성 및 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운영) 인천광역시장은 진도개 하나 발령 또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주요 훈련 및 필요시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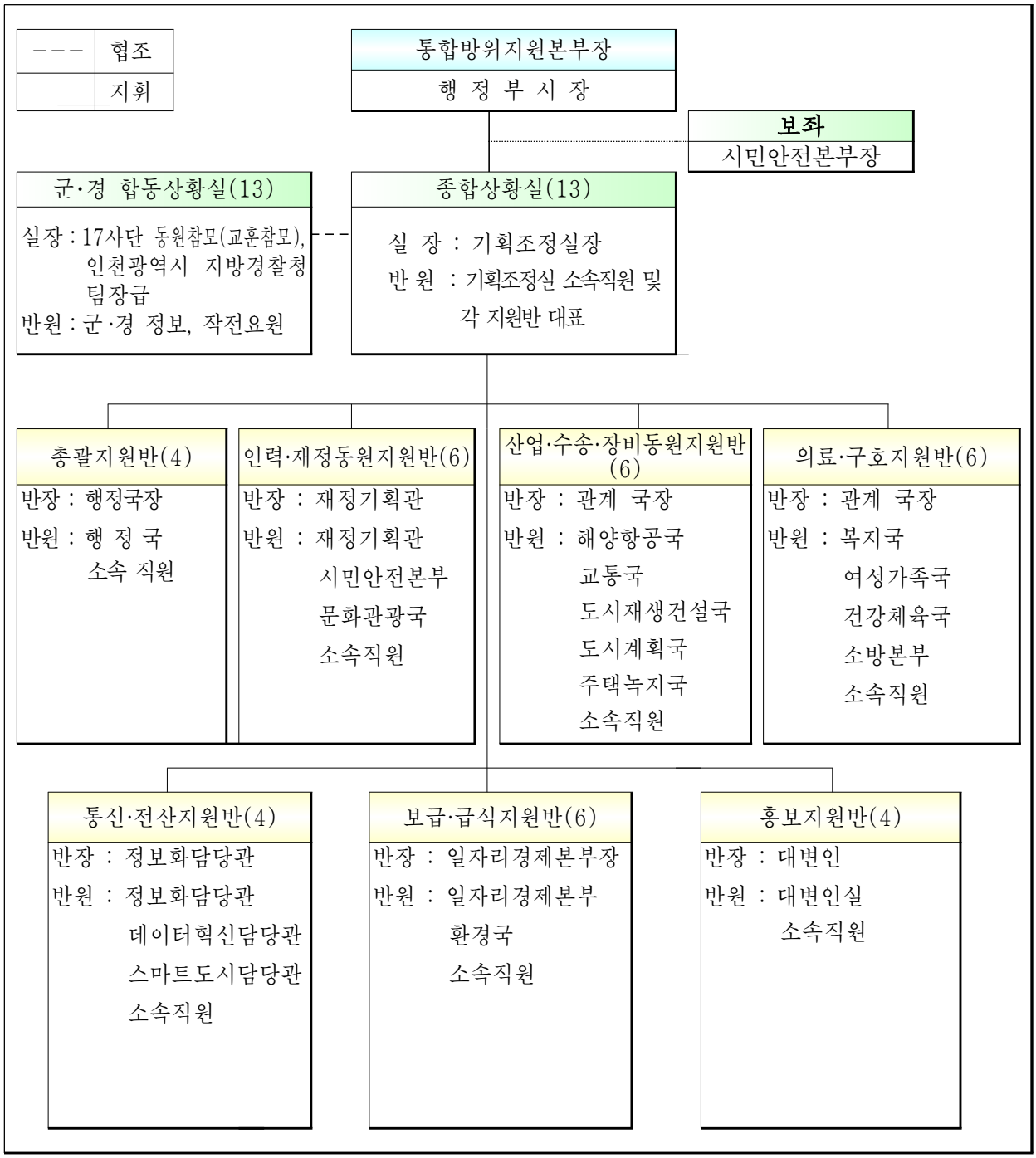
제6조(각종 지원기구통합) 인천광역시장은 적 침투 등 각종 사태에 군·경·관·민·예비군·사회단체가 공동 대처하고, 지방행정관서장의 상호지원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확대하여 각종 기구를 통합 지역단위 공동방위체제를 확립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제2조 관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6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선두리 골프장) 사업의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0. 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42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 명칭: 강화 선두리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245,000㎡(9홀)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부지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245,000	245,000	-	
체육시설용지	소 계	56,170	55,850	감)350	
	티	1,939	1,939	-	-
	그 린	5,128	5,128	-	-
	훼 어 웨 이	48,522	48,172	감)350	-
	벙 커	487	487	-	-
	연 습 그 린	94	94	-	-
건축시설용지	소 계	5,590	5,940	증)350	
	클 럽 하 우 스	2,343	2,343	-	-
	관리창고동 및 부속시설	3,097	3,097	-	-
	그 늘 집	150	500	증)350	신축 350㎡
기반시설용지		21,192	21,192	-	변경없음
녹지용지		162,048	162,048	-	변경없음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명: ㈜강호개발 대표이사 오진국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산리 14-1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2013. 9.13. ~ 2020.12.31.

○ (변경) 2013. 9.13. ~ 2021.0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71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및 매립목적 변경 승인 고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및 매립목적 변경’ 승인 신청(수도권매립지 1공구)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해양항만과, 032-440-4819)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0. 5.

인 천 광 역 시 장

1.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연월일: (최초)1989.10.13. (변경승인연월일: 2020.10.5.)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나.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척하고 도로로 결정) 결정된 부지의 매립목적 변경
   나. 변경사항
      (당초)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그 밖의 시설용지 (캠핑장,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변경)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그 밖의 시설용지 (캠핑장,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공공시설용지(도로)**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와 면적
   가. 위치: 인천시 서구 경서·백석·오류·검암동 일원, 김포시 양촌면 일원
   나. 면적: 1공구(15,999,830.4㎡), 1-1공구 (2,207㎡)
   *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공사면적: 서구 경서동 일원 2,207㎡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변경 없음)
   1989.6. ~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설치, 공구 분할
   나. 변경사항
   - 실시계획면적 변경: (당초) 9,720,604㎡ (변경) 9,722,811㎡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공사면적 2,207㎡ 추가)
   - 공구 분할로 인한 매립면허면적
     (당초) 1공구(16,002,037.4㎡) (변경) 1공구(15,999,830.4㎡), 1-1공구 (2,207㎡)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게재 생략

8. 매립실시계획 및 매립목적 변경 승인조건: 게재 생략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19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 변경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제2017-0-인천광역시-29호	행복나눔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6번길3 (만수동)	지 민 주	- 부부, 부모자녀간 관계회복관 가족내 소통을 위한 강연운영 - 가족봉사단이나 아동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 운영 -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한국 정착지원사업 운영 - 가족구성원의 정서안정과 유대감을 높이는 문화예술 공연활동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19호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5.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자격 완화요건을 반영하고, 면허기준 중 3년 이상 관내 운전경력 요건을 1년 이상 관내 거주 또는 1년 이상 관내 운전경력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양수에 필요한 무사고 경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 (안 제2조제2호)

나.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간 1년 이상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개정함. (안 제2조제3호)

다.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의 면허시험장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증빙서류에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 (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택시화물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804, 팩스 : 032-440-8669, 전자메일 : lemons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기산하여”를 “계산하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를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로 하며, 같은 목에 “기산하여”를 “계산하여”로 한다.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할 것

제2조제3호(현행 제2조제2호) 중 “당해 운전경력 중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4년간 3년 이상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를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간 1년 이상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며, 같은 호 중 “경력이 있는 자.단,”을 “경력이 있는 자. 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인천지방경찰청(면허시험장)”을 “지방경찰청의”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면허시험장”을 삭제하며, 제8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조제2호에 따른 양수자)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면허의 기본자격)	제2조(면허의 기본자격)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을 완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1. ----------
가. 면허신청공고일(“양도·양수인가, 대리운전 및 상속승계시는 신청일”로 한다)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인 자	가. ---------- 계산하여 -----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6년이상인 자.	나. ---------- 계산하여 ----------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 계산하여 --------.

현 행	개 정 안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다. ---------- ----------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 계산하여 ---------- ---------- ---------- ---------- ---------- ---------- ---------- ---------- ---------- ----------
<신 설>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나.「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할 것
2.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운전경력 중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4년간 3년이상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단, 사업구역이 강화·옹진군으로 제한된 업종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 ----------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간 1년 이상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단, ---------- ---------- ------.
제10조(경력확인) 1. 무사고경력은 인천지방경찰청(면허시험장) 확인조회에 의한다.	제10조(경력확인) 1. -------- 지방경찰청의 ----------.
제14조(구비서류 및 제출서류의 인정) ① (생 략) ② (생 략) 1·2. (생 략) 3.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면허시험장, 경찰서) 1부 4. ~ 7. (생 략)	제14조(구비서류 및 제출서류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경찰서) -- 4. ~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8.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가.~자. (생 략) <신 설>	8.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가.~자. (현행과 같음) 차.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조제2호에 따른 양수자)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

관련법령	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3.> ④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관련법령	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

관련법령	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4. 3.> 1.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것 ⑩ 제9항제2호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4. 3.> 부칙 <제716호, 2020. 4. 14.>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규칙 개정사항이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자격 완화요건을 반영하고, 면허기준 중 지역제한 요건을 1년 이상 관내 거주 또는 1년 이상 관내 운전경력으로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교통국 택시화물과장 김정범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18호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아동돌봄 시행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돌봄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아동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돌봄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인천광역시 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ysi33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사람

2. “돌봄서비스”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말한다.

3.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등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의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2.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한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및 어린이집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이사랑꿈터 운영 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및 아이돌보미 사업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업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5. 타 법 또는 조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6. 그 밖에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해당 군·구를 통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해당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보고받고, 돌봄시설의 보완·보수가 필요하거나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 및 보안 상 위험이 생길 경우 등을 대비해 필요한 경우 돌봄시설 설치·운영자에게 CCTV 등의 설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돌봄업무 담당 과장 및 시 교육청 초등돌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돌봄시설 및 관련 단체의 대표

2. 아동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아동돌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업무 주관부서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아이돌봄 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사랑꿈터”(이하 “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육아·공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꿈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꿈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꿈터 공간조성 내 리모델링 및 장난감, 교재·교구 등 비치물품 구매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6.(생략)
> ② (생략)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 ⑤ (생략)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다함께 돌봄사업 및 지역아동센터는 예산 범위 내 추진 가능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 비용추계 사항 없음.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변 중 인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19호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인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5,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ohyer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관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군·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인문교육 실시 기관) 법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4.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6.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7.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군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지소
11. 그 밖에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한 기관

[붙임 2]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조(사업), 제6조(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4조와 제6조의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규모 및 지원 대상 법인·단체의 활동에 따라 소요비용이 달라지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도서관정책과장 김 호 석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25호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 월 29 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정원규칙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아트센터 인천의 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문 개정 등을 포함하여 제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유명사로서 띄어쓰기 없이 하나의 단어로 시설명칭 표기(조례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 주요사업의 범주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문을 추가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세부운영 기준 신설(안 제3조, 안 제28조)

○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명확화와 다양한 자문의견 청취를 위한 소관 위원회 위원 수 제한조항 등 관련 조문 개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2조)

○ 아트센터인천운영과 직제 신설사항 반영(안 제6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 시설 사용시간, 사용료 납부,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사항 등 시설 사용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 사용료 감면을 통한 공연활성화 도모(안 제17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 공연장 홍보·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제휴 및 공연물 저작권 보호 조항 신설(안 제22조,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8.(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를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2조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 인천”을 각각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 인천의”를 “아트센터인천의”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트센터 인천 운영자문위원 회”를 “자문하기 위하여 아트센터인천 운영자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내”를 “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트센터 인천의 단장”을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장은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은 아트센터인천”으로, “아트센터 인천 대관심의위원회”를 “아트센터인천 대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이내”를 “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트센터 인천의

단장”을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 인천의”를 “아트센터인천의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간”을 “오전”으로, “17:00”을 “12: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간사용”을 “오전·오후 사용”으로, “공연자”를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08:00)에도 아트센터 인천”을 “09:00)에도 아트센터인천의 시설”로 한다.

2. 오후 13:00 ~ 17:00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연·행사에필요”를 “공연·행사에 필요”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사용료 미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교의 선교·포교행위
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5. 그 밖에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제21조제1항 중 “아트센터 인천의”를 “아트센터인천의”로, “아트센터 인천이”를 “아트센터인천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일 전까지”을 “30일 전 또는 입장권 판매 개시일 중 빠른 날짜 이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일”을 “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의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송·영화, 광고, 음반 등 정보매체의 내용물 제작을 위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제2호가목 중 “20”을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0”을 “50”으로 한다.

제25조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관람 등”을 “관람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32조 앞에 “제6장 보칙 등”을 삭제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제33조 및 제34조로 하고,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며,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사회 저명 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강 전까지 등록을 취소 하는 경우 : 전액환불
2. 아트센터인천의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폐강 시 : 전액환불
3. 개강 후 1/2 시점까지 수강 취소 시 : 잔여분 환불(환불수수료 10% 제외)

4. 개강 후 1/2 시점 이후 수강 취소 시 : 환불 불가

제30조(종전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촬영하는”을 “촬영 또는 녹음하는”으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31조)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33조 앞에 “제6장 보칙 등”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트센터인천 사용료 등

1. 기본시설 사용료

1-1. 콘서트홀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순 수 예 술		대중예술 및 기업콘서트	
	기본사용료 (6시간)	추가사용료 (시간당)	기본사용료 (6시간)	추가사용료 (시간당)
오전 (09:00~12:00)	3,940	660	7,880	1,31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4,730	790	9,460	1,580
심야 (22:00~09:00)	-	1,580	-	3,160

[세부사항]

가. 기본사용 범위

- 기본사용이란 1회 공연 등을 위하여 기본시설(무대 및 객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기본사용(6시간)에는 1회의 리허설 및 준비 등 3시간과 1회의 공연 및 철수 등 3시간이 포함되며, 각각의 시간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계약된 시간 외 추가사용은 상기 표에 의한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30분이상 사용 시 1시간 요금을 적용함.
- 기본시설지원 : 무대 및 객석, 분장실, 그린룸, 기본조명, 무대기기 및 냉·난방
- 인력지원 : 무대감독 1명, 음향감독 1명, 조명감독 1명, 하우스매니저 1명 및 공연장 안내원 지원

※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기본사용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하여 결정

나. 장르구분

- 순수예술 : 클래식, 국악, 재즈, 무용, 연극, 오페라
- 대중예술 : 가요, 팝 등 대중음악 및 뮤지컬
- 기업콘서트 : 영리법인(주식회사, 영리사단법인,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이 주최하는 전석 초대공연 또는 사용자가 위 영리법인의 협찬이나 후원을 받고 그 영리법인을 위해 초대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단, 순수예술에 한하여 오픈 좌석의 30% 이상을 일반유료 판매분으로 등록하면 기업콘서트로 보지 아니한다.)

다. 할인 및 할증가산

- 장기공연 : 5일 이상 10% 할인
- 심야시간 : 야간 추가사용료의 100% 가산

라. 기타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

1-2. 다목적홀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순 수 예 술		대중예술 및 행사	
	준비·리허설·철수 사용료	1회 사용료	준비·리허설·철수 사용료	1회 사용료
오전 (09:00~12:00)	150	600	300	1,200
오후 (13:00~17:00)	150		300	
야간 (18:00~22:00)	300		600	
심야 (22:00~09:00)	450 (22:00 이후 매 3시간당)	-	900 (22:00 이후 매 3시간당)	-

[세부사항]

가. 기본사용 범위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하며 1회 사용시간은 공연(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를 말함.
- 심야사용은 1회 사용료의 100% 가산
- 공연(행사)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에는 별도의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음.

- 기본시설지원 : 무대 및 객석, 분장실, 기본조명, 무대기기 및 냉·난방
- 인력지원 : 무대감독 1명, 음향감독 1명, 조명감독 1명, 하우스매니저 1명 및 공연장 안내원 지원

단, 공연외의 단순 행사시에는 인력지원에 대한 별도협의 필요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하여 결정

나. 장르구분

- 순수예술 : 클래식, 국악, 재즈, 무용, 연극, 오페라
- 대중예술 : 가요, 팝 등 대중음악 및 뮤지컬
- 행 사 : 세미나, 회의, 강좌 등 공연과 상관없는 진행이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다. 할인

- 장기공연 : 5일 이상 10% 할인

라. 기타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평일)	기 본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	비 고
오케스트라 리허설룸 (659㎡)	200	50	○ 기본사용 시간 : 4시간(냉·난방 지원포함) ○ 기타사항은 시장과 협의·결정 ○ 할인 및 할증 - 장기사용 : 5일 이상 10% 할인 - 토·일, 공휴일 : 평일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 심야시간 사용은 시간당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 가산 ※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앙상블 리허설룸 (121㎡)	100	25	
리셉션룸 (132㎡)	150	40	
귀 빈 실	100	25	
개인연습실	20	5	

3. 기타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기 본 사용료	추 가 사용료 (시간당)	비 고
콘서트홀	4,730	1,580	○ 방송, 영화, CF 등 사용 ○ 기본사용 시간 : 3시간 - 계약시간 외 초과사용은 시간당 단가 적용 - 시설지원(해당 공연장 및 공간의 무대, 객석, 분장실, 그린룸, 기본조명, 무대기자재, 냉·난방) ○ 할증내용 - 토·일, 공휴일 : 평일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 심야사용 : 평일 추가사용료(시간당)의 100%가산 ○ 무대설비 사용 시 사용료 별도 부과 ※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콘서트홀 광장·로비	2,370	790	
다목적홀	900	300	
오케스트라 리허설룸	360	120	
앙상블 리허설룸	180	60	

4. 녹음대관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평일)		기 본 사용료	추 가 사용료 (시간당)	비 고
콘서트홀	오전, 오후, 야간	1,320	440	○ 기본사용 시간 : 3시간 - 계약시간 외 초과사용은 시간당 단가 적용 - 시설지원(해당 공연장 및 공간의 무대, 객석, 분장실, 그린룸, 기본조명, 무대기자재, 냉·난방) ○ 할 증 - 토·일, 공휴일 : 평일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 심야사용: 기본사용료의 100% 가산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다목적홀	오전, 오후, 야간	250	90	

5. 무대설비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부 대 설 비	부과 기준	사용료		비 고
			콘서트홀	다목적홀	
악기	그랜드 피아노				
	- 스타인웨이 대형피아노 (D274)	1일/1대	110	-	조율비 별도 (전속 조율사만 조율가능)
	- 중형그랜드피아노	1일/1대	50	-	
	- 업라이트피아노	1일/1대	30	30	
	타악기 - 팀파니/1조(5EA)	1일/1조	90	-	
무대	덧마루 -오케스트라 편성	1일	90	-	인력비 대관자부담
	-합창단 편성	1일	90	-	인력비 대관자부담
	-40㎡ 이하	1일	-	50	인력비 대관자부담 콘서트홀 공동사용
	-10㎡ 추가시	1일	-	30	인력비 대관자부담
	합창라이저/1조(7EA)	1일	60	60	콘서트홀 공동사용
음향	녹음 - 2 Track (CD, File, Wave 등 녹음)	1회	50	50	디스크, 저장장치 신청자 부담
	- Multi Track 녹음	1회	100	100	저장장치 신청자 부담
	- 외부기자재 (음향소스제공)	1회/1대	50	50	
	녹화				DVD 신청자 부담
	- DVD, File (아트센터인천 장비)	1회	50	50	Fullshot 녹화
	- 외부기자재 (영상/음향소스제공)	1회/1대	50	50	카메라 2대까지 가능
	마이크				
	- 무선 마이크	1회/1대	25	25	건전지 사용자 부담
	- 유선(콘덴서) 마이크	1회/1대	10	10	서스펜션마이크 무료

구분	부 대 설 비	부과 기준	사용료		비 고
			콘서트홀	다목적홀	
음향	모니터 스피커 - 12인치, 15인치	1회/1대	25	25	
	인터컴 - 무선인터컴	1일/1대	무료	무료	건전지사용자부담
	확성 설치 (콘솔 및 유선마이크) - 2ch 이하 - 3ch 이상	 1일 1일	 100 200	 100 200	
	빔프로젝터 - Rear Projector (20,000ANSI) - Front Projector (20,000ANSI)	 1일 1일	 200 -	 - 200	
조명	Grand MA 2(light)	1작품	80	80	콘서트홀 공동사용
	Moving LED Light	1일/1대	20	20	
	LED STRIP BAR	1일/1대	20	20	
	FollowSpotLight 1.75kw	1회/1대	30	-	운용인력 대관자부담
	ColorFilter	1작품	100	100	
기타 사용	라디오(인터넷)방송중계 및 녹음	1회공연	300	300	테이프신청자 부담
	TV 녹화 / 중계	1회공연	300	300	(지역방송50%할인)
	외벽 현수막	1회공연			승인조건
로비 사용	포토존	1일/1개	100	100	
	펜사인회	1일/1개	150	150	
	현수막		승인 조건	승인 조건	
	배너		승인 조건	승인 조건	
	홍보 및 판촉부스 설치	1일/1개	80	80	
	추가 설치	1일/1개	100	100	
디자인 지원	조명 디자인	1작품	1,000	1,000	크루비용별도
	음향 디자인	1작품	1,000	1,000	공연일 정상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비 고

- 기자재 사용은 분야별 담당자 사전 검토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파손시 사용자가현물배상
- 음악회 공연 및 각 장르 공연에 사용되는 피아노 사용 시 정상적인 연주행위(건반 연주)외 사용금지
- 상기 위의 장비 및 기타 자재 사용용도 외 사용 금지
- 상기 내용상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용요청 시 무대기술 담당팀과 협의 후 사용 결정
- 피아노를 사용하는 공연의 경우 공연의 완성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1회 이상을 조율 하여야 함
-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부대설비는 사용이 거절될 수 있음
- 콘서트홀과 다목적홀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콘서트홀 사용자의 사용을 우선으로 함.

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구분 (평일)	기준	수강료	비 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회	20,000	○ 1회 2시간 기준 ○ 재료비는 본인 부담 ○ 강의 성격 및 기간, 횟수에 따라 금액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공개 마스터클래스	1회	150,000	○ 1회 50분 기준 ○ 시간에 따라 금액 범위 조정할 수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아트센터인천---------- ----------.
제2조(위치) 아트센터 인천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송도동) 일원에 둔다.	제2조(위치) 아트센터인천------ ---------- ----------.
제3조(주요사업) 아트센터 인천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주요사업) 아트센터인천--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공연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 ---------- ---------- ---------- ---------- ---------- ---------- ---------- ----------
제4조(개관 및 휴관) 아트센터 인천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상 필요한	제4조(개관 및 휴관) 아트센터인천---------- ----------. ---- 아트센터인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트센터 인천 운영자문위원 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 아트센터인천의 ---------- ---------- 자문하기 위하여 아트센터인천 운영자문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① ---------- ---------- 내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트센터 인천의 단장,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관광 업무 관련 부서장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
제7조(위원장의 임기)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현행과 같음)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설치) 단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설치) 아

장은 아트센터 인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아트센터 인천 대관심의위원회(이하 “대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트센터인천운영과장은 아트센터인천---------- -- 아트센터인천 대관심의위원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2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①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① ---------- ---------- 내외---------.
②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아트센터 인천의 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시간) ① 아트센터 인천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사용시간) ① 아트센터인천의 시설 ---------- ---.
1. 주간 09:00 ~ 17:00	1. 오전 ---- 12:00
<신 설>	2. 오후 13:00 ~ 17:00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주간사용을 하는 경우 공연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오전·오후 사용--- 사용자---------- ---------- --.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 ---------- ----------

심야시간(22:00 ~ 08:00)에도 아트센터 인천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09:00)에도 아트센터인천의 시설--------.
제18조(사용의 범위 등) 아트센터 인천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사용의 범위 등) 아트센터 인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부속설비 : 무대설비, 음향설비, 조명설비, 그 밖의 공연·행사에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등	3. ---------- ---------- 공연·행사에 필요----------
제19조(사용의 허가 및 취소) ① 아트센터 인천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사용의 허가 및 취소) ① 아트센터인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등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2. -------- 손해배상, 사용료 미납 ----------
<신 설>	3. 종교의 선교·포교행위
<신 설>	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신 설>	5. 그 밖에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제21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① 아트센터 인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트센터 인천이 정한 기일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① 아트센터인천의 ---------- ---------- ---------- 아트센터인천이 ---------- ----------.
② 아트센터 인천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아트센터인천 ---------- ----------.
③ 사용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시장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시설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 ---------- ----------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의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송·영화, 광고, 음반 등 정보매체의 내용물 제작을 위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
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위약금으로 제외한 금액 반환	가. ---------- 30----------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위약금으로 제외한 금액 반환	나. ---------- 50----------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25조(홍보물의 게시) 사용자가 각종 공연 등의 홍보물을 아트센터 인천에 부착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지정된	제25조(홍보물의 게시) ---------- 아트센터인천----------

장소에만 게시(揭示)하여야 하고 공연·행사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 ---------- ----------.
제5장 관람 등	제5장 관람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제27조(자체기획 공연 등의 관람료) ① 시장은 아트센터 인천이 자체기획 공연 등(타인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자체기획 공연 등의 관람료) ① --- 아트센터인천---- ----------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사회 저명 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

	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강 전까지 등록을 취소 하는 경우 : 전액환불 2. 아트센터인천의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폐강 시 : 전액환불 3. 개강 후 1/2 시점까지 수강 취소 시 : 잔여분 환불(환불수수료 10% 제외) 4. 개강 후 1/2 시점 이후 수강 취소 시 : 환불 불가
제28조 (생 략)	제29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제2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아트센터 인천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공연 주체와 사전 협의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4. (생 략) ② (생 략)	제30조(행위의 제한) ① ------ 아트센터인천 ----------. 1. (현행과 같음) 2. ---------- 촬영 또는 녹음하는 ----------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1조(홍보) 시장은 아트센터 인천의 대관 및 공연사업 활성화	제32조(홍보) ---- 아트센터인천 ----------

를 위하여 홍보물 배부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 --------.
제6장 보칙 등	<삭 제>
<신 설>	제6장 보칙 등
제32조·제33조 (생 략)	제33조·제34조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 제5조 제2항(시장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관련조문 : 안 제3조(주요사업), 안 제28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 상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 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수강생	5,760	720	1,080	1,080	1,440	1,440
비 용	423	77	83	83	90	90

나. 추계 결과

○ 총사업비 : 423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비 고
수강생	5,760	720	1,080	1,080	1,440	1,440	일반시민, 청소년
필요인력	32	4	6	6	8	8	강사
사업비 계	423	77	83	83	90	90	
수 당	82	12	15	15	20	20	강사료
홍보비	43	7	8	8	10	10	포스터 리플렛 등
사무관리비	48	8	10	10	10	10	교육기자재 등
행사운영비	250	50	50	50	50	50	공연 연계

- 수 당 : 강사 4명 × 300천원 × 10회 = 12,000천원
- 홍보비 : 7,000천원 × 1식 = 7,000천원
- 사무관리비 : 8,000천원 × 1식 = 8,000천원
- 행사운영비 : 기획공연 50,000천원 × 1식 = 5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수강료	14,400	21,600	21,600	28,800	28,800	115,200
	소계	14,400	21,600	21,600	28,800	28,800	115,200
세출	운영비	77,000	83,000	83,000	90,000	90,000	423,000
	소계	77,000	83,000	83,000	90,000	90,000	423,000
재원 조달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77,000	83,000	83,000	90,000	90,000	423,000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

수강생 추계

(단위 : 원)

연도	반원	강좌수	횟수	수강인원
2021	30	4	6	720
2022	30	6	6	1,080
2023	30	6	6	1,080
2024	30	8	6	1,440
2025	30	8	6	1,440

수강료 세입 추계

(단위 :명, 원)

반원	단 가	강좌수	횟수	수입액
30	20,000	4	6	14,400,000
30	20,000	6	6	21,600,000
30	20,000	8	6	28,800,000

4. 작성자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이종연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0-26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 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각종 비리 예방 및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장이 학교 업무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감사하는 “학교자율감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완화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기준 적용 및 면책의 운영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다. 자체감사활동의 실질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바.「적극행정 운영규정」

사.「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아.「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자.「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3. 주요내용

가. 규칙안을 장별로 구분함

- 제1장 총칙(안 제1조～제11조)
- 제2장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안 제12조～제19조)
- 제3장 감사결과의 처리(안 제20조～제24조)
- 제4장 감사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안 제25조～제29조)
-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안 제30조～제34조)

나. 자체감사의 감사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

- 교육감→교육감 또는 교육장

다. 학교자율감사 실시 근거 신설(안 제3조)

라. 의견 제시 요청(사전컨설팅) 제도 신설(안 제7조)

- 사전컨설팅 신청 업무, 제외 대상 등

마. 감사담당공무원 우대 조항 신설(안 제10조)

-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

바. 실지감사의 실시 및 종결,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제19조)

사. 재심의 및 직권 재심의 조항 신설(안 제23조, 제24조)

아. 적극행정의 면책기준, 신청 및 심사 조항 신설(안 제31조~34조)

자. 별지 서식 신설

- 사전컨설팅 신청서, 감사 회피 신청서, 기관장 의견서, 확인서, 문답서 (별지 제1호~제5호)
- 적극행정 면책신청 안내, 신청서, 검토서, 심사결과(별지 제10호~제13호)

4. 의견제출

본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

-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1137) 감사관
- 팩스 : 팩스) 032-420-8169

마. 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6. 전부개정규칙(안): [붙임 2]

7. 관계법령: [붙임 3]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적사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업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4조(학교자율감사)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3조제1호의 종합감사에 한하여 학교장이 감사반을 편성하여 학교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자율감사의 대상기관, 감사방법, 결과처리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차감사) ① 교육감은 다른 기관과 협약을 통해 교차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차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일상감사) ① 교육감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의 대상·범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견 제시 요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

당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요청받은 감사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부 또는 감사원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의 대상·범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종합감사의 주기)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 규모 등 현실적인 여건상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보완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특정감사, 재무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지감사: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
2. 서면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3. 사이버감사: 업무관리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Edufine) 등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담당공무원)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순환전보대상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감사에 대한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감사담당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하여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유예 또는 면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창안, 제안, 혁신적인 업무개선 등의 실적이 있거나, 청렴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장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제12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교육장은 감사계획 수립 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민원 등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4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제13조(감사반의 편성)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감사담당공무원 중 직급이 높은 자 또는 같은 직급 중 해당 직급의 경력이 많은 자를 반장으로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담당공무원의 회피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감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공무원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 제출 요구)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종합감사는 10일전)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6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17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들을 수 있다.

제18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관계

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단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6. 현지조치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0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요구: 관계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관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경고: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써 개선·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의: 가벼운 과실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써 개선·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감사결과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도 비슷한 비위사실을 반복하였을 경우

4. 기관주의: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기관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 지적사항 유형별 세부 처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감사처분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사항(다만, 처분기준이 명료한 경우 제외)
2. 재심의 및 직권 재심의 사안
3.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따른 면책심사
4. 변상 또는 고발이 예상되는 사안
5. 처분결과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
6. 표창대상 선정에 관한 심의
7.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감사관 소속 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감사관이 지명한 기술직·전산직공무원·시민감사관 중 1명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총괄서기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해당감사를 실시한 감사반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심의회는 안건의 제출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회 결정문을 작성한다.

⑧ 심의회는 필요시 감사대상자, 참고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⑨ 교육감은 심의회 심의결과를 처분결정에 참작한다.

⑩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처분대상자가 사립학교 또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 소속 교직원일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처분을 요구한다.

③ 처분대상자가 교육감 소속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비위내용을 수감기관에 알려주는 것으로 종료할 수 있으나, 그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현 소속 기관장에게 처분내용을 통보하여 신분상·재정상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결과 “주의” 이상의 신분상 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피처분자의 인사담당 부서에 알려야 하며,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반영한다. 단, 감사관은 사학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결과를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23조(재심의 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직권 재심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2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증거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제25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모든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특정사안, 고충·진정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기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26조(감사의 사후관리)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2조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또는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결과 처분사항 중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미결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시민감사관 위촉 등) ① 교육감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과정에 참관 또는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8조(표창) 교육감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감사실적 우수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무담당자 또는 기관과 감사실적이 우수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외부기관 수감보고) 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또는 사학기관 소속 교직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나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30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1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실시 전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3조(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해당 감사결과 처분통보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처분 통보 이후에 접수된 면책심사 신청에 대하여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 ①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21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사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면책신청 심사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5일 내에 이를 교육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전컨설팅 신청서

신청기관 (부서명)		신청일자	
건 명			

1.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

2. 관련 법령 및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1) 관련 법령

2) 사업개요 또는 추진경과

3. 사전컨설팅 신청 사유

1) 주요 쟁점(甲설 및 乙설 필수기재)

2) 부서에서 확인 및 점검한 사항

3)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배경

4. 사전컨설팅 체크리스트

대상	점검항목	해당여부 (O/X)	구체적 사항 기재
컨설팅 대상여부 (제7조 제1항)	감사관 감사대상 업무인지		
	공공의 이익 및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안인지		
	다수 기관 관련 사안인지		ex.관계기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인지(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은 아닌지)		ex.판례·해석
	동일 사안에 대한 정립된 판례나 법령소관 기관의 해석이 있는지		ex.법령 및 쟁점사항
	이해관계자와 담당자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컨설팅 신청전 소관법령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질의 · 회신절차 등을 진행한바 있는지		ex.해당내용 첨부
	기타 기관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컨설팅/법령해석 등을 신청하여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는지		ex.해당내용 첨부
반려대상 여부 (제7조 제2항)	처리 절차 등이 법령에 규정된 사안인지		
	컨설팅 신청대상이 이미 행해진 처분은 아닌지		
	수사 · 소송 · 행정심판 ·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이력이 있는지		ex.해당내용 첨부
	결재권자가 컨설팅 신청내용 외 기타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는지(자체적인 충분한 검토 관련)		기타 방안

*구체적 사항 기재시 필요한 경우 붙임으로 상세자료를 첨부

※ 붙임 :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 증빙·근거법령·해당 사업의 세부자료 등

【별지 제2호 서식】

회피 신청서

<table>
<tr><td colspan="2" rowspan="2">신 청 인</td><td>소 속</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직 위</td><td></td><td>성 명</td><td></td></tr>
<tr><td rowspan="2">감사
대상</td><td>일정</td><td colspan="4"></td></tr>
<tr><td>기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회피 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년 월 일

신청인 (서명)</td></tr>
</table>

【별지 제3호 서식】

기관장 의견서

1. 종합 의견

2. 적극행정 면책 요청 사항

3. 감사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에 대한 기관장 의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부서)명 직 성명 (인)

※ 작성요령

1. 종합 의견 : 컨설팅 및 감사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등 감사내용 전반에 대한 기관장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
2. 적극행정 면책 요청사항 : 감사결과 선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선처 사유 등이나 처분요구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관련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 요청의 사유 등을 기술
3. 감사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항 :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중 감사단의 법령 적용 오류, 사실 관계 오인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지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실 관계 등을 중심으로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관련자

소 속	직	성 명	생년월일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3. **관계기관(부서) 의견**

※ 해당 있을 경우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 및 직명 :

(전소속 기관명·직위·직명)

성 명 :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사항에 관하여 (일 자) (장 소)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답에 앞서 진술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조리에 맞도록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다>

문 :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틀림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간인한 후 서명(날인·무인)하게 하다.

년 월 일

진술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감사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감사처분심의회 심의결과 결정문

○○○ 기관(학교)의 종합(부분,기강,민원)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감사처분심의회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함

일련번호	심의안건(제목)	피 감 사(통보)기관	감사기간	주요지적내용	심의결과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제23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감사결과 미결사항 처리부

기 관 명 :

구분		관련문서번호 (시행일자)	건명 및 내용	결 재	
				담당 서기관 (사무관)	감사관
미결사항 및 처리대책	미결사항				
	처리대책				
처리결과					

【별지 제9호 서식】

외부기관 감사(수사) 수감사항 보고

우리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1. 실시기관(부서) :

2. 실시구분(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수사, 기타) :

3. 실시기간(또는 예정기간) :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

5. 대상 업무(또는 대상자) :

6. 발견된 사항 :

7. 기 타 :

기 관 장

【별지 제10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신청 안내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신청인 소속 기관의 장 의견을 첨부하여 면책심사 신청

2. 신청기간: 감사가 종료 된 날부터 해당 감사결과 처분 통보 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별지 제11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제33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별지 제1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감 사 기 관 명			감사 기간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안)				
감 사 결 과				
신 청 사 유				
검토의견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종 합 의 견				

【별지 제13호 서식】

면책심사결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심 사 결 과						

[붙임 3]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발췌사항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규정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발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감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재심의신청 등) ①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2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5] [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7. 14, 타법개정]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5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4. 삭제

제13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시행 2010. 12. 17] [감사원규칙 제222호, 2010. 12. 17, 제정]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15조(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① 감사담당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때에는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 전에 해당 요청 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자체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은 감사담당자등은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구체적 이용 용도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17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
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5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25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제29조(감사결과의 공개) 법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지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감사대상사무"라 한다)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2. 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3.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제12조(확인서의 요구) ①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감사반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그 밖에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1조(직권 재심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0. 8. 25] [대통령령 제30968호, 2020. 8. 25, 일부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6조·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 8. 25.]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25.>
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0. 8. 25] [대통령령 제30969호, 2020. 8. 25, 일부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해당 시·군·구가 소속된 시·도의 감사기구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의 경우(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목개정 2020. 8. 25.]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25.>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감사원법」제34조의3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전컨설팅'이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 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인용'이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소속기관 또는 부서(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기각'이란 신청기관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의견제시'란 사전컨설팅을 통해 인용·기각이 아닌 별도의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반려'란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한 신청 등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안에 대해 검토·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전컨설팅의 대상) ① 사전컨설팅의 대상은 신청기관이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으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 한다.<개정 2019.3.5.>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3.5.>

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22] [감사원규칙 제325호, 2020. 5. 22, 일부개정]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